#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

2024. 11.

관계기관 합동

# 1. 추진배경

- □ IFRS17 도입으로 계리가정의 재무적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, 원칙 중심 기준서 특징상
  - 회사별 가정 편차에 따른 '고무줄 회계이익\*' 논란 제기
    - \* IFRS4 대비 IFRS17 이익 증가율('22년말 주석 사전공시) : △782% ~ 189%
- □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되는 손해율,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계약마진(CSM)이 과대계상
  - (무·저해지상품)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임에도 완납 직전까지 해지가 발생한다고 가정
    - 계약자의 비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수익성을 산출하고, 보험료를 할인하여 상품 쏠림현상\* 심화
    - \* 신계약 무·저해지상품 비중(보장성 초회보험료): 11.4%('18년)→30.4%('21년)→**47.0%**('23년)
  - <sup>②</sup> (단기납종신) 보너스 지급시 환급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 다수
    - 향후 보너스 지급시점(예: 10년 이후) 추가해지 발생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 우려
  - (손해율) 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\*을 경과 기간·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음
    - \* 최적위험률(보험부채 결산시 적용) = 예정위험률(보험료 반영) x 손해율 가정
    - 연령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 등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현금흐름이 부정확하게 추정될 소지
- □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먼 미래로 이연되고, 실제 관측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\* 저하 우려
  - \* 美 Mid-Continent('97), Penn Treaty('17) 등은 무저해지상품 판매 後 지급불능 발생
  - 장기적으로 손실 발생시 **장래 보험료 인상** 등을 유발하여 **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**될 소지
- ☞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산출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

# 참 고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 특징

- □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은 **해약환급금**이 일반 보험보다 **적은**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 ~ 40% 저렴한 상품
  -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**환급금이 전혀 없거나**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

#### <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 예시 >

일반 보험			무해지 보험			비교	
<b>월 보험료 20,539원</b> (총납입보험료 493만원)			<b>월 보험료 13,813원</b> (총납입보험료 332만원)			( <b>보험료</b> ) 표준형 보험대비 <u>33% 저렴</u>	
경과기간	해약환급금	환급률	경과기간	해약환급금	환급률		
10년	137만원	55.4%	10년	-	0%	/さLユ Z \	
20년	307만원	62.3%	20년	154만원	46.3%	(환급률) 나이기가즈 하고그 어그	
30년	383만원	77.7%	30년	191만원	57.7%	납입기간중 <u>환급금 없고</u> 납입기간후 표준형의 50%	
40년	485만원	98.4%	40년	243만원	73.2%	급급기인구 <u>표단8의 30%</u>	
50년	712만원	144.5%	50년	356만원	107.4%		
60년	1,143만원	231.8%	60년	571만원	172.3%		

- \* 건강보험(질병후유장해 특약) 남자 30세 가입, 20년납, 100세 만기
- 상품개발시 **해지자**에게 일반 보험상품보다 **환급금을 적게 지급** 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할인하였기 때문에
  - 해지율 예측 실패시에는 보험금 재원의 과부족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또는 보험사 재무리스크 발생 가능

### < 예정 및 실제 해지율 차이에 따른 손익 비교 >

해지율 비교	예상재원 대비	보험회사	계약자
예정 > 실제 ( <b>과소 해지</b> )	실제재원 <b>부족</b>	<b>손실</b> 발생	<b>낮은</b> 보험료 부담*
예정 < 실제 ( <b>과다 해지</b> )	실제재원 <b>과대</b>	<b>이익</b> 발생	<b>높은</b> 보험료 부담

\* 예상해지율을 높게 적용(해지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)할수록 보험료는 낮게 산출

# Ⅱ. 주요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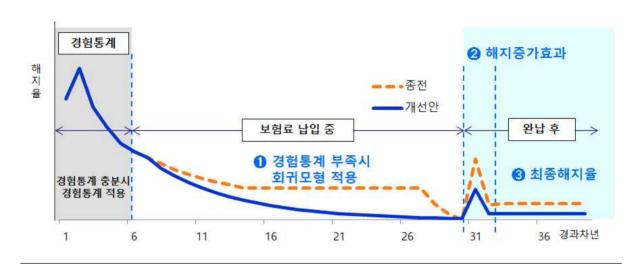
◈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·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(Consensus-building)

#### 1. 무·저해지상품 해지율

- □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·저해지상품의 특성을 고려\*하여 원칙\*\* 마련
  - \*계약자 관점에서 납입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반면, 완납시 기대이익(장기 보장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)이 크다는 점 고려
  - \*\* 데이터 부족시 계약자가 이성적인 투자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(美실무표준 사례)
  - (납입중) 해외사례·산업통계에 비추어 로그-선형모형(0.1%수렴, 이하 '원칙모형')을 원칙 적용
    -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他모형을 적용할 경우 엄격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
  - (1) 他모형: 선형-로그모형(완납시점 수렴점 0%), 로그-로그모형(완납시점 수렴점 0.1%)에 **한정**
  - (2) 감사보고서,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
    - 他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 내용
    - 원칙모형과의 CSM, 최선추정부채 차이
    - 원칙모형과의 지급여력비율(K-ICS) 차이(요구자본, 가용자본)
    - 원칙모형과의 당기순이익 차이 등
  - (3)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의 차이를 정기(분기별) 보고 로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
  - ※ 금융감독원이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점검하고,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 신설하여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
    - 통계량을 확보해나가면서 규제수준 강화 등 조정 검토

- ② (완납후) 해약환급금 계단식 발생에 대해 해지증가효과\*를 반영하고,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종해지율\*\*을 추정
  - \* 해지유보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무·저해지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과 해지 유보기간에 적용된 해지율의 차이를 가산
  - \*\* (1)해외통계 0.8% 또는 (2)해외 표준형 대비 저해지상품 해지율 상대도 20% 활용

#### <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>



## 2.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

- □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의 사유로 **환급률이 급증** 하는 상품의 경우 보너스 지급시 추가해지 상승을 반영
  - 표준형 상품의 **누적유지율을 활용**하여 **해지 수준을 역산**하거나, 각 사가 **30%를 하한**\*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선택하고 문서화
    - \*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 11차년도 해지율(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)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.4%~30.2%인 점 감안

#### 3.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

- □ 경험통계가 충분하고,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\*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
  - \* 예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(산업통계) 30대 89% → 40대 103% → 50대 140% → 60대 186%

- □ 담보별로 경험통계의 집적수준에 따른 산출방법 차등화
  - 자사 통계가 충분할 경우 확보된 자사 통계를 활용하여 경과 기간별·연령군단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
  - <sup>2</sup>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군단별 상대도를 활용<sup>\*</sup>하여 간접적으로 산출
    - \* 예: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 × 군단연령별 상대도 = 경과기간·연령군단별 손해율

# Ⅲ. 향후 추진계획

- □ 계리가정 가이드(실무표준)을 배포하여 '24년 연말결산시' 적용
  - \* 단, 손해율 연령구분의 경우 결산 시스템 수정 등이 필요하므로 최장 '25.1Q까지 반영
  - 필요시 감독행정 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 추진

# 참 고

# 무·저해지보험 적용해지율<sup>보험료</sup> 관련 조치계획

- □ (현황)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적용해지율\*은 관련 법규(감독규정 및 행정지도)에 따라 최적해지율\*보다 보수적으로 산출
  - \* 최적해지율:보험부채 평가(결산)시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 적용해지율: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 (최적해지율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조정)

#### < 관련 법규 >

- □ 보험업감독규정 제7-75조의2(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)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. 다만, 제7-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□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(행정지도) 제11조(적용해지율의 설정 기준)
- ①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적용해지율은 최적해지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최적해지율보다 보수적으로 산출한다.
- ② 보험회사는 향후 계약자 행동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해지율 대비 적용 해지율을 할인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할인 가능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□ (고려사항) 신설되는 최적해지율 실무표준에 맞춰 적용해지율 개선시상품 전면 개정을 위해 실무표준 시행 후 약 3개월의 준비기간 필요
  - 개선된 적용해지율을 적용한 보험료 재산출 및 기초서류 작성, 내·외부 검증, 안내자료 작성 등에 약 3개월 소요
  - 또한, 준비기간 중 최적해지율이 적용해지율 대비 낮게 산출되어 감독규정(§7-75의2)의 일시적 미준수 상태 발생 우려
- □ (조치사항) 신설되는 최적해지율 실무표준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해지율 모범규준을 개정\*('25.1분기 중)하고, '25.4월 상품 개정시기에 시행토록 추진
  - \* 행정지도 개정을 위한 '행정지도심의위원회' 개최(1~2개월 추가 소요) 등 감안
  - 상기 적용해지율 개선 관련 상품 전면 개정 준비기간 중 감독 규정(§7-75의2)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